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9조(이용 계약)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 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기간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4)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급하며 전자적으로도 열람 및 출력력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100%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 안내 요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2024년 비용의 부담)

그 해의 정한 수가 및 본인부담율에 의한다.

[별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별표2]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금액 (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별표3]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본 기관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목욕 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한다.

[별표4]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 급여비용의 80%산정)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	40%감경	60%감경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원	12,700	7,620	5,0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원	11,451	6,870	4,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7,150	4,290	2,860

< 본인 부담률 >

구분	본인 부담율	비고
일반대상자	15%	계약과 동시에 서비스 가능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	9%	
	6%	
기초생활수급자	0%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